

의안번호	2219030
의 퇴 인	김민전 의원
회 답 일	2026. 7. 10.
추계번호	26C2668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11조의7 (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식세포의 동결·보존을 지원할 수 있음. 이 경우 혼인 여부에 따라 지원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의7 (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생식세포의 동결·보존을 추가로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 동결·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5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음

- 현행법 시행령 제14조¹⁾에 난소·고환 절제, 항암치료 등의 의학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, 연령, 소득,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50%를 생애 1회 지원함
 - 생식세포 동결·보존은 비급여이며, 여성은 최대 200만원,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
- 2025년 약 4.5억원이 지원되었으며(여성 228명, 남성 128명 등 총 356명 지원),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²⁾에 5억 8,200만원이 편성됨(국고보조율 48%)

□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기존 지원의 대상 또는 지원 수준이 확대되거나 지자체가 별도의 지원을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기존 지원의 확대 여부, 지자체의 관련 지원 사업 시행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1)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

제14조(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·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
2. 부속기종양적출술
3. 난소부분절제술
4. 고환적출술
5. 고환악성종양적출술
6. 부고환적출술
7. 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
 - 가. 항암제 투여
 - 나.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
 - 다. 면역억제 치료
8. 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
 - 가. 터너증후군
 - 나. 클라인펠터증후군
 - 다.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

2)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의 내역사업인 난임극복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(사업명: 영구 불임 예상 난자·정자 냉동 지원)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문지은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